의안 번호	10

2022. 7.

회성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회성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 번호	10

제출년월일 : 2022. 7. 12 .
제 출 자 : 창 원 시 장

1. 제안사유

❍ 마산회원구 회성동의 회성종합시장 및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2022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을 위해 수립한 “회성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회성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개요

❍ 사업목적

-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의 회성종합시장과 인근 주거 지역에 대하여 각종 사업으로 지역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
- 면　　적 : 158,000㎡(활성화지역 450,000㎡)
- 사업유형 : 일반근린형
- 사업기간 : 2023.01 ~ 2026.12(4년간)
- 총사업비 : 145.9억

[국비 78.6억원, 도비 15.7억원, 시비 36.7억원, 기금 7.9억원, 민간 1.4, 자체지방비 5.6억원]

❍ 사업계획(안) 구상도



상권활성화

A–1. 회성꽃리단길
① 회성 꽃리단길 조성
② 가드닝 프로그램

A–2. 회성 꽃리단 센터
① 회성 꽃리단 센터 조성
② 마을카페 및 공방 운영
③ 도시농부학교 운영

생활환경개선

B–1. 회성 온실
① 회성 온실 조성

B–2. 그린집수리(동행사업)
① 그린집수리
② 골목길 정비
③ 집수리 아카데미

B–3. 범죄예방환경개선
① 범죄예방환경설계
② 생활안전 아카데미

B–4. 스마트그린가든
① 스마트그린가든

B–5. 시니어플랫폼
① 시니어플랫폼
② 시니어 아카데미

공동체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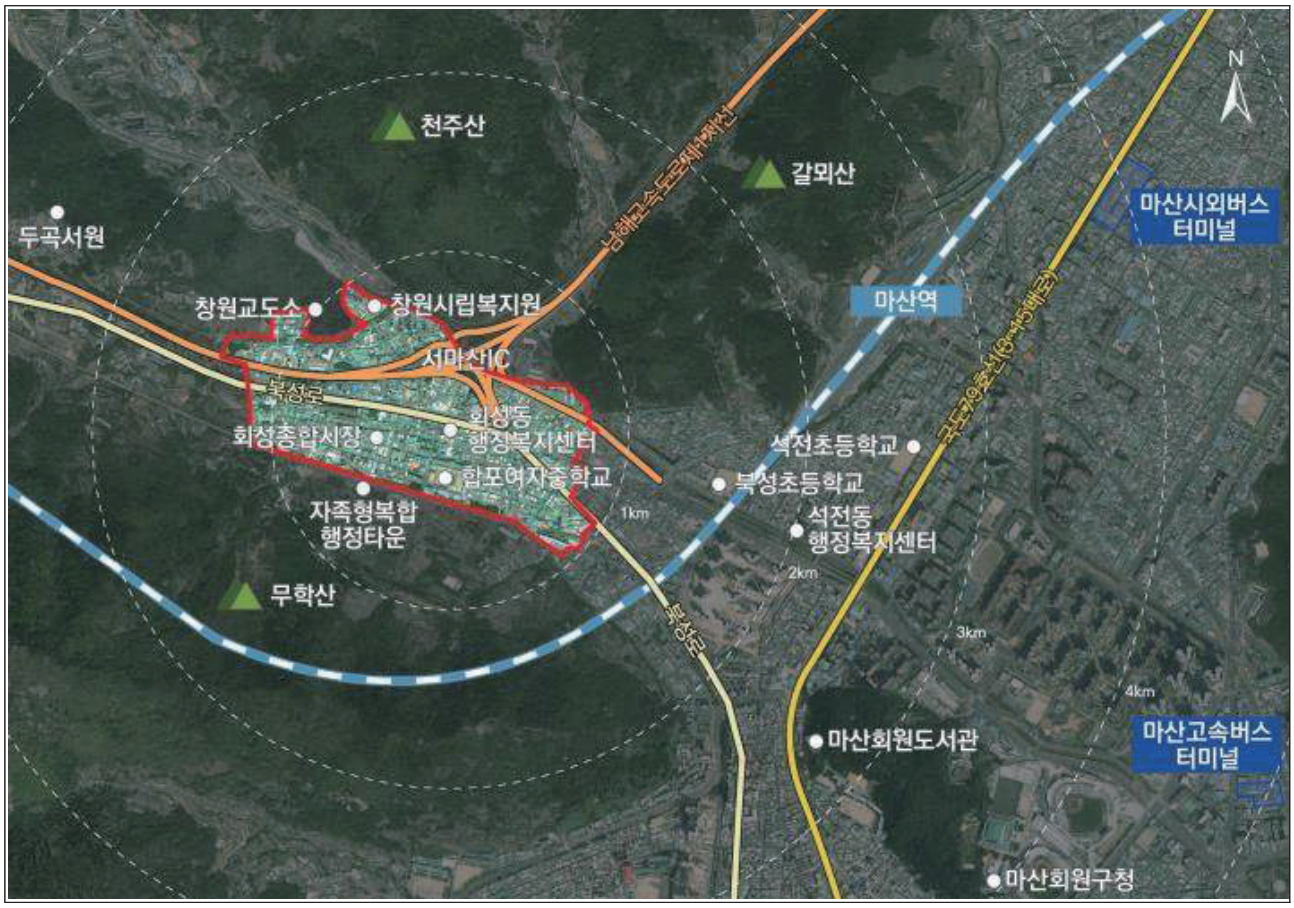
C–1. 공동체 역량강화
① 현장지원센터 및 주민협의체 운영
② 역량강화 프로그램
③ 성과관리 모니터링
④ 주민공모사업

C–2.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
① 마을관리협동조합 구성 및 설립교육
②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사업화 지원

❍ 사업계획(안)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 내용	총사업비(백만원)
상권활성화	A-1. 회성 꽃리단길	HW	회성 꽃리단길 조성	지역정체성을 반영한 꽃을 테마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가로 조성 (975m)	635.0
		SW	가드닝 프로그램	주민참여형 골목 가꾸기 프로그램 운영 (4년)	40.0
		소계			675.0
	A-2. 회성 꽃리단 센터	HW	회성 꽃리단 센터 조성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공간 마련 (신축/지상3층/연면적 980㎡)	6,637.1
		SW	마을카페 및 공방 운영	카페 및 공방 운영을 위한 바리스타, 꽃차, 플라워아트, 꽃비누 만들기 등 교육 (4년)	60.0
		SW	도시농부학교 운영	회성온실과 연계하여 다양한 가드닝 기법 교육 (4년)	40.0
		소계			6,737.1
	계				**7,412.1**
생활환경개선	B-1. 회성 온실	HW	회성온실 조성	기존 공영주차장 복합화를 통한 국화재배 및 상품제작 등을 위한 공간 조성 (주차장 23면/온실 및 체험공간)	2,519.1 (기금790포함)
		소계			2,519.1
	B-2. 그린 집수리 (동행사업)	HW	그린집수리	노후주택 외부경관 개선사업 (68호)	816.0 (민간81.6포함)
		HW	골목길 정비	내 집 앞 골목길 가꾸기 사업 진행 (400m)	240.0
		SW	집수리 아카데미	집수리를 위한 다양한 실습교육 (4년)	80.0
		소계			1,136.0
	B-3. 범죄예방 환경개선	HW	범죄예방환경설계	안전한 주거지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1식)	400.0
		SW	생활안전 아카데미	생활안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4년)	40.0
		소계			440.0
	B-4. 스마트 그린가든	HW	스마트그린가든	스마트시설 도입을 통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995㎡/973㎡)	393.6
		소계			393.6
	B-5. 시니어 플랫폼	HW	시니어플랫폼	시니어 세대의 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한 경로당 리모델링 (136㎡/110.8㎡)	581.3
		SW	시니어 아카데미	건강증진,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4년)	40.0
		소계			621.3
	계				**5,110.1**
공동체 활성화	C-1. 공동체 역량강화	SW	현장지원센터 및 주민협의체 운영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 (4년)	903.8
		SW	역량강화 프로그램	도시재생대학, 도새재생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4년)	160.0
		SW	성과관리 모니터링	연차별 성과관리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추진 효율성 확보 (1년)	30.0
		SW	주민공모사업	지역 문제 해결 및 도시재생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모사업 추진 (4년)	80.0
		소계			1,173.8
	C-2. 마을관리 협동조합	SW	마을관리협동조합 구성 및 설립교육	마을관리협동조합 구성 및 설립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2년)	50.0
		SW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사업화 지원	위탁 운영 및 각 사업에 따른 분과별 활동 지원 (1년)	50.0
		소계			100.0
	계				**1,273.8**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177.0**
자체	**그린집수리**				**624.0** (민간62.4포함)
총사업비 14,597.0백만원 (마중물 13,101.4백만원, 기금 790백만원, 민간 144백만원, 자체지방비 561.6백만원)					**14,597.0**

❍ 회성지구 도시재생사업 위치도



3.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추진경위>

❍ 도시재생 예비학교 운영(기본과정) : ’20. 5 ~ 12.

❍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선정 : ’20. 12. 21.

❍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 : ’21. 1. ~ 12.

❍ 주민협의체 모집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1. 2.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1. 12.

❍ 도시재생 대학 운영(총 9회차 중 6회 운영) : ’22. 3.

❍ 주민공청회 실시 : ’22. 7.

<향후계획>

- ’22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 ’22. 9.
- 국토교통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22. 10.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 ’22. 12.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 ’23. 1.
-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료 : ’26. 12.

▣ 법적근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지방의회 의견청취)

[별첨]

관 련 법 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가 지원할 대상 사업 및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식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⑦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